
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4956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8. 20.

발의자 : 박주현 · 장정숙 · 윤영일
장병완 · 조배숙 · 박지원
김경진 · 천정배 · 황주홍
김광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청은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매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, 바다의 어종 변화와 어획량 감소, 양식장 집단 폐사 등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.

한반도 수온을 최초 관측한 1997년 이후 7월 평균 수온이 0.14°C 상승했으나, 2010년 이후에는 2.4배가량 높은 0.34°C 씩 상승함. 2010년 21.4°C 에서, 2018년 24.3°C 까지 상승하면서 8년 만에 2.9°C 상승함.

올해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150만 마리에 이르는 어패류 폐사 및 67곳의 어가에서 피해가 발생함.

현행법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5호 중 “기후변화”를 “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, 기후변화”로 개정하여,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에 고려하여 해양의 건강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(안 제2조 제5호 및 제11조제5호).
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기후변화”를 “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, 기후변화”로 한다.

제11조제5호 중 “기후변화”를 “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, 기후변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“해양건강성”이란 수산물 생산, 해양관광, 일자리 창출, 오염 정화, <u>기후변화</u> 대응, 해안 보호 등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복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해양환경의 상태와 그 상태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.	5. ----- ----- <u>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, 기후변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6. ~ 8. (생 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)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제11조(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)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기후변화</u> 대응을 위한 해양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	5. <u>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, 기후변화</u> ----- -----
6. ~ 10. (생 략)	6. ~ 10. (현행과 같음)